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1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34,260,000	19,027,800
일반회계	464,070,000	13,922,100
특별회계	170,190,000	5,105,700
기타특별회계	170,190,000	5,105,7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20,000	30,600
주차장특별회계	350,000	10,500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000	30,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0,000	6,3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9,591,000	3,887,73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50,000	28,500
치수사업특별회계	330,000	9,9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6,739,000	1,102,17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328,676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수 있다.